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카카오페이증권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공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해외ETP는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해외ETP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해외ETP(Exchange Traded Product)는 기초자산과 수익률이 연동되는 상품으로 해외거래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을 의미하며, 카카오페이증권 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 해외ETP 중 ETN은 기초지수 변동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만기가 있는 증권이며, 'ETF'와 거래방법은 유사하나,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상이한 파생결합증권입니다. ETN 거래시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자산, 기초지수의 과거가격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레버리지 ETP는 기초자산 일일수익률의 1배, 2배, 3배 등 배수를 추종하며,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의 변동폭보다 손실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인버스 ETP는 기초자산 일일수익률의 역을 추종하며, 기초자산의 가격 하락을 기대할 때 투자하는 상품으로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거래와 비교 시 외국 통화 증권의 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증권시장 개장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공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용이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생가능한 불이익사항 & 손실 가능 상황 및 손실추정액	해외ETP는 시장상황 및 환율변동, 자산가격의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 ~ 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금손실위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의 일일수익률에 레버리지/인버스 승수를 곱한 수익률을 추종합니다. 레버리지 효과가 존재하는 ETP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아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리화 효과 위험) 레버리지/인버스 ETP는 복리효과가 있으므로, 기초자산의 단순 수익률과 ETP의 실제 수익률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ETP를 장기 보유할 경우 기대한 수익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레버리지가 3배인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일(T)에 100인 경우, 다음날(T+1일) 10% 상승하고 그 다음날(T+2일) 10% 하락한 경우를 가정하면, T+1일의 ETP의 순자산가치는 130(=100+10%*3)이나, T+2일에는 전일 증가한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3배만큼 하락하므로, 91(=130-130*10%*3) 입니다.

(발행사 신용위험) 해외 ETP의 경우에도 발행회사의 신용위험(ETP를 발행한 회사의 부도 등 급격한 재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며, 유동성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자산이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합·분할위험) 해외 ETP의 경우, 발행회사의 사정에 따라 병합·분할 등의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 사항으로 인해 별도의 사전 예고 없이 ETP의 매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괴리위험) 매수-매도간 수급 불일치 등으로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적오차(기초자산과 ETP의 순자산가치의 차이)와 괴리율(기초자산과 시장에서 형성된 ETP 가격의 차이) 등으로 인해 ETP의 자산 가치를 의미하는 순자산가치의 값이 실제 값보다 과대/과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거래비용위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거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추가 손실(원화의 평가 절하시에는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환율변동 위험이 존재하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P에 비해 거래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제비용 발생위험) ETP의 투자 대상 자산이 지수 또는 파생상품을 포함하거나 원유, 천연가스 등과 같은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롤오버비용*, 이자비용 등 운용과 관련된 기타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Roll-Over, 선물 만기 시 포지션 이월(선물 월물 변경)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유기간위험) 파생상품 ETP를 1영업일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신탁보수, 위탁매매수수료, 복리효과 등에 따라 당해 ETP가 추구하는 투자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상품의 특성상 국내에서 거래되는 ETP와는 다르게 정보의 접근 및 취득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정보 제공시에도 해당 국가와의 시차 등으로 인해 정보취득이 지연되거나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세제 및 법률상 위험) ETP가 상장된 국가의 법령 및 제도 등에 따라 세금납부, 거래방식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결제처리 절차 또는 현지 사정 등에 의해 결제대금 및 배당금 지급일정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TP 종목별 배당세율이 상이할 수 있으며, 원천 징수되는 배당세율에 차이가 있을 경우, 고객이 세금을 환입하거나, 환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ETP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분배금(배당금)은 국내주식의 배당처럼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산하여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기타 자세한 위험은 종목별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해외ETP 거래를 위한 자격요건이 있나요?

A. 해외ETP는 1등급 초고위험 상품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공격투자형'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래를 위해서는 해외ETP 거래 약정(앱 > 관리 > 거래설정 > 파생상품거래 > 해외ETP)을 체결해야 합니다.

해외ETP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으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가 제한됩니다.

Q. 해외ETP와 국내 ETF 및 ETN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A. 해외ETP는 해외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환율변동 위험이 있으며, 국내 상장된 ETF·ETN에 비해 거래비용(환전비용 등)이 높을 수 있습니다.

Q.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ETP는 보유기간 동안의 기초지수 수익률과 차이가 있나요?

A.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해외ETP는 기초지수의 일일수익률에 대하여 2배 이상을 추종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레버리지 배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리효과로 인해 기초자산의 단순 수익률과 해외ETP의 실제 수익률 간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만기가 있는 해외ETN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만기가 있는 해외ETN은 발행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되므로, 만기 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파산, 회생절차, 유동성 부족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ETP가 청산되는 경우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해외 ETP가 청산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청산으로 인해 분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과 더불어 배당소득이 과세되어 거래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 상담이
빈번한
숙지 필요사항

위험등급		- 해외ETP: 1등급 (초고위험) ※ 당사는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투자위험등급은 1등급 (초고위험)에서 5등급(초저위험)까지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류기준 예시) <table><tr><td>상품위험등급</td><td>1등급 초고위험</td><td>2등급 고위험</td><td>3등급 중위험</td><td>4등급 저위험</td><td>5등급 초저위험</td></tr><tr><td>투자자성향</td><td>공격투자형</td><td>적극투자형</td><td>위험중립형</td><td>안정추구형</td><td>안정형</td></tr><tr><td rowspan="3">상품구분</td><td>파생상품ETF</td><td>ETF</td><td></td><td></td><td></td></tr><tr><td>ETN</td><td></td><td></td><td></td><td></td></tr><tr><td>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해외주식</td><td>국내주식</td><td colspan="3"></td></tr></table> (투자성향별 투자적합상품) <table><tr><td>투자자성향</td><td>공격투자형</td><td>적극투자형</td><td>위험중립형</td><td>안정추구형</td><td>안정형</td></tr><tr><td>투자적합상품</td><td>1등급(초고위험) 이하 상품</td><td>2등급(고위험) 이하 상품</td><td>3등급(중위험) 이하 상품</td><td>4등급(저위험) 이하 상품</td><td>5등급(초저위험) 상품</td></tr></table>						상품위험등급	1등급 초고위험	2등급 고위험	3등급 중위험	4등급 저위험	5등급 초저위험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구분	파생상품ETF	ETF				ETN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적합상품	1등급(초고위험) 이하 상품	2등급(고위험) 이하 상품	3등급(중위험) 이하 상품	4등급(저위험) 이하 상품	5등급(초저위험) 상품
		상품위험등급	1등급 초고위험	2등급 고위험	3등급 중위험	4등급 저위험	5등급 초저위험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상품구분	파생상품ETF	ETF																																											
			ETN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관리종목, 해외주식	국내주식																																														
투자자성향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																																										
투자적합상품	1등급(초고위험) 이하 상품	2등급(고위험) 이하 상품	3등급(중위험) 이하 상품	4등급(저위험) 이하 상품	5등급(초저위험) 상품																																										
계약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사유)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근거에 따라 해소하며, 해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객이 회사에 약정해지 신청을 한 때 - 회사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거래 수수료 - 해외ETP매매와 관련하여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부과금, 위탁 중개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등 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https://kakaopaysec.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전 수수료 - 환전수수료는 외국환은행이 고시한 고시환율의 1% 내외로 정해집니다. (단, 외국환은행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수수료 - 매매수수료 외에도 외화증권을 거래하거나 보유함으로 인해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매도 세금 -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국세청(IRS)의 세법 1446(f)*에 근거하여 미국주식 중 PTP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해매도금액의 10%를 현지에서 원천징수합니다. *IRS 1446(f) 란?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도록 IRS(미국 국세청)가 신설한 조항으로 2023년 1월 1일 거래부터 적용되며, 국내 전 증권사 공통사항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통상적으로 미국내 천연자원 및 부동산,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파트너십 회사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며, MLPs(Master Limited Partnerships)로 지칭 - 2023년 1월 1일 매도 체결분부터 보유기간이나 손익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것																																											

해외ETP 설명서

카카오페이증권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024

(심의일:2022.12.19)

	으로 PTP매도 세금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큰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시 PTP 종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PTP 종목 리스트는 회사 홈페이지(https://kakaopaysec.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리스트에 명시되지 않은 종목들도 미국 국세청에 의하여 PTP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리스트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TP 종목으로 지정되었더라도 조건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은 자산운용사가 수익이 "US trade 또는 business"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거나, 10%이내라는 사실을 Qualified Notice(QN)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PTP 종목은 과세 및 보고 등의 사유로 입/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PTP종목 매도세금은 매도대금 결제일+2영업일에 출금되며, 계좌에 충분한 잔액이 없는 경우 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PTP 종목의 매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상품 및 서비스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https://www.kakaopaysec.com) >>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포털 >> 민원접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 -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s://www.kofia.or.kr) >> 투자자지원센터 >> 분쟁조정제도																
금융소비자 권리안내	<table><tr><th>구분</th><th>위법계약해지권</th><th>청약철회권</th><th>자료열람요구권</th></tr><tr><td>내용</td><td>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td><td>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td><td>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td></tr><tr><td>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td><td>△ (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td><td>X</td><td>O</td></tr><tr><td>신청방법</td><td>-</td><td>-</td><td>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포털 >> 공시/안내 >> 금융 소비자보호법 >> 자료열람 요구권)</td></tr></table>	구분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내용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	△ (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	X	O	신청방법	-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포털 >> 공시/안내 >> 금융 소비자보호법 >> 자료열람 요구권)
구분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자료열람요구권														
내용	금융회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서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해 해지수수료 등 불이익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의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해외ETP 약정 해당 여부	△ (ETF는 위법계약해지 대상)	X	O														
신청방법	-	-	카카오페이증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소비자보호 포털 >> 공시/안내 >> 금융 소비자보호법 >>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사기 예방	금융사기, 아래 프로세스를 기억하세요. 1. 계좌 지급정지 신청 :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 2.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 경찰서 (112) 3. 피해구제 신청: 계좌 지급정지 신청 금융회사 (지급정지를 신청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4. 개인정보노출 등록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pd.fss.or.kr) ※ 금융사기란? 전화, 메신저, 인터넷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어 재산을 편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